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1.

발 의 자 : 박정하 · 조은희 · 배준영
안철수 · 김승수 · 김석기
박성훈 · 권영진 · 박충권
김태호 · 우재준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,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,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음.

그런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,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미술작품의 재평가, 존치기간, 이전·교체·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, 유지·관리 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여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,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·관리계획 수립

및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·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, 제9조의3, 제9조의5 신설).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2항 중 “감정·평가”를 “감정·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재평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그 밖에”를 “제3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·절차, 그 밖에”로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존치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.

제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점검 결과”를 “점검 및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철거”를 각각 “이전·철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에”를 “제3항에”로 한다.

②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유지·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할 수

있다.

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점검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의5를 제9조의6으로 하고,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5(미술작품 유지·관리비용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한 건축주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유지·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축주가 적립한 유지관리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하되, 건축주가 유지·관리에 기울인 노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2(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· 방법) ① (생략)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·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 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 다. <u><신설></u>	제9조의2(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·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감정·평가 및 제3항에 따 른 재평가----- ----- ----- -----. ③ 시·도지사는 설치된 지 10 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고려하 여 존치 여부 등에 대한 평가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. ④ ----- ----- ----- ----제3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 준·절차, 그 밖에----- ----- -----
③ 제1항에 따른 감정·평가의 절차,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 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, 그 밖 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 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	

다.

1. (생략)

2. 미술작품의 위치, 형태, 노후
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
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
경우: 보수 또는 철거 조치

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
점검, 기록·관리 등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설>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이전·철거-----

-----이전·철거-----

⑤ 제3항에-----

-----.

제9조의5(미술작품 유지·관리비
용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
치단체는 제9조의3제2항에 따
른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한
건축주에 대하여 미술작품의
유지·관리비용을 지원할 수
있다. 이 경우 건축주가 적립한
유지관리 충당금 금액을 한도
로 하되, 건축주가 유지·관리
에 기울인 노력과 재정여건 등
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달리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
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제9조의5</u> (미술작품의 요청) (생략)	자료제공	<u>제9조의6</u> (미술작품의 요청) (현행 제9조의5와 같음)	자료제공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	------